평화도 경제도 파주로!

파주 반다비 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과업지시서

2026. 11.

파 주 시

[체 육 과]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본 「파주 반다비 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과업지시서」는 파주시 반다비 체육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전문 운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 파주 반다비 체육센터의 운영, 시설관리, 안전관리, 이용자 서비스 등 위탁업무 전반에 적용한다.

나. 관계 법령, 파주시 조례 및 별도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그 외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다. 수탁자는 문화체육관광부 「반다비체육센터 관리·운영 지침」 등 관련 지침을 고려하여 **장애인 우선 이용 및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 이용**이라는 시설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가. "파주시장"이란 본 위탁업무의 발주 및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파주시장을 말한다.

나. "수탁자"란 파주시장과 민간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 "장애인체육회"란 장애인 대상 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하여 파주시 및 수탁자와 협의하는 관계 기관을 말한다.

제4조(과업대상)

가. 시 설 명: 파주 반다비 체육센터

나. 소 재 지: 파주시 금릉동 111번지 일원

다. 주요시설: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및 프로그램실 등

라. 시설규모: 부지면적8,754㎡ / 건축면적1,749㎡ / 연면적3,922㎡ (지하1층, 지상3층)

구분	면적(㎡)	주요시설
합계	3,922.07	
지상 3층	93.38	다목적체육관(2층연결), 창고, 옥상정원
지상 2층	1,476.38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GX
지상 1층	1,742.18	수영장
지하 1층	610.13	기계실, 전기실, 창고 등
주차시설		총 90면(장애인전용 20면, 전기차 전용 장애인 주차1면 포함)

마. 위탁대상은 건축물, 기계·전기·소방설비, 체육시설, 부대시설 및 수탁 운영에 필요한 장비 등으로 하며 상세 재산목록은 인계·인수서로 확정한다.

제5조(과업범위)

가. 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

1)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일반 사무의 처리
2) 시설의 장비 및 기기 등의 안전 관리
3) 시설의 내구연수 증대를 위한 개수, 보수 등 제반 업무
4) 시설의 주요 장비 및 각종 기기의 정상 유지 및 점검
5) 시설의 안전관리 업무 수행, 조작, 유지관리 점검 및 기록
6) 시설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변경, 사용허가의 제한 등에 관한 사무
7) 시설 사용시간의 연장에 관한 사무
8) 시설 사용료의 부과·징수,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무
9) 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의 일시정지에 관한 사무
10)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변상 등에 관한 사무
11) 시설 이용에 관한 홍보
12) 위탁 운영과 관련된 직원채용 및 교육·관리

나. 프로그램의 운영·관리

1)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2) 이용자 수요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3) 프로그램 운영 시 안전사고 방지 업무
4)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직원 관리 업무

다. 시설 이용 회원의 관리

1) 시설 이용 회원의 확보를 위한 시설 활성화 업무
2) 시설 이용 회원의 만족도 조사 실시
3) 시설 이용 회원의 안전·위생 관리
4) 시설 이용 회원의 민원 해소

라. 장애인 이용 지원

1) 장애인 편의시설의 적정 관리
2) 장애인 이용 접근성 확보
3) 장애인의 합리적인 이용 편의 제공
4) 장애인 대상 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등

마.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의 운영시간·공간 배정** 등 세부 사항은 파주시장과 사전 협의하여 정하며,

장애인체육회와의 협력사항은 수탁자의 시설관리 책임 범위와 구분하여 운영한다.

바. 그 밖에 파주시장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무

제6조(과업기간)

가.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실제 개시일 및 종료일은 계약서에서 확정한다.

나. 운영 중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관계 법령과 계약에 따라 파주시장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7조(운영개요)

구 분	담당업무	인원수 (인)	비고
총괄관리		1	체육센터 업무총괄
운영관리	회원,운영관리	1	서비스 지원 등
	출납사무	1	회계 및 재무관리
	안내, 접수	4	입회원관리/입장료수납
시설관리	기계선임	1	시설물 유지관리
	기계/영선	2	소방설비 기계분야 유지관리
	락카관리	4	남녀락카관리 및 환경미화
	환경미화	1	환경관리
지도운영	지도총괄	1	지도자 관리
	체육지도자	11	수영·헬스·GX 지도 및 수상안전관리
합 계		**27**	

가. 운영인력은 운영관리, 안내·접수, 시설관리, 환경관리, 지도운영 및 수상안전 등 직무별 적정 인원으로 구성한다.

나. 직무별 배치인원·근무형태·운영시간·휴관일은 최종 원가산정 결과와 운영계획 및 계약서에 따라 확정한다.

다. 시설 운영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이용 수요, 안전 및 프로그램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라. 수탁자는 개관 전 시설 및 장비 인수, 인력 교육, 회원 등록·안내 등 개관 준비업무를 수행한다.

마. 수탁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포함한 전문인력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바. 수탁자는 시설 규모 및 운영 프로그램에 적합한 체육지도자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파주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주요업무)

가. 용역수행사항

1) 안전 관리, 이용객 안내 및 수질관리 등

2) 시설 전반적인 행정업무 관리
3) 중앙감시반 및 자동제어(기계설비), 비상발전기, 정수처리장치, 덕트(공조) 설비, 옥내외 소화설비, 오수처리시설, 시수, 저수조, 관정, 급배수설비, 위생 설비 기타 기계 계통 설비 전반의 운전관리 및 유지보수
4) 전체 시설 주변 환경정비 및 청결 유지
5) 시설물 및 부대시설 등의 점검 등 안전관리
6) 기타 파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간단한 시설공사 및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관리

1) 수탁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파주시장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탁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대재해 발생 시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등 필요한 긴급조치를 우선 실시하고, 즉시 파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수영장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 **수상안전요원**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6]에 따라 **감시탑에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별표 5])과 안전·위생 기준([별표 6])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 및 직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7) 비상시 모든 관련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하고 특히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수질관리

1) 수영장은 관계 법령에 따른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상시 적정한 수질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안전위생기준

2) 수탁자는 수영장의 수질 관리 운용이 가능한 관리자를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3) 수영장 이용에 대해 반드시 수영복 또는 상의 반팔 또는 탈의, 하의 반바지 등 수영복에 준하는 복장을 착용한 자에 한하여 이용토록 관리한다.

4) 유행성결막염, 전염성피부병 등 환자는 수영장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5) 수영장 내로 음식물 반입을 금지시키고 기타 이물질이 수영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수시로 청소를 실시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라. 시설물관리

1) 수탁자는 수영장 내의 모든 설비 및 시설물이 정상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의 종류별로 주기적인 점검(외관기능 작동점검 등)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생되었거나 예견될 때에는 즉시 보고하여 파주시장의 지시에 따라 보수·교체 등의 모든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하며 점검일지를 기록 관리한다.
2) 안전사고 방지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 주간 및 야간 전체에 대하여 관리를 실시하고 운영상 예상되는 미비 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 아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을 실시한다.
3) 수영장 및 모든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지상태·이완상태를 철저히 점검한다.
4) 전기시설물에 대한 누설전류 등 안전 상태를 점검하여 감전 사고에 대비한다.
5) 수영장시설 및 수영장주변 청결상태를 점검하고 청소를 실시한 후 충분한 일광소독으로 전염병을 예방한다.

마.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1) 장애인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2) **장애인체육회와 협의를 통한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시간 배정**
3)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한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의 안전하고 전문적인 운영
4) 장애인 편의시설 및 이동 동선 점검 등 장애인 이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 증진

바. 그 밖에 파주시장이 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과업의 수행방법)

가. 용역지침

1) 환자 발생 시는 병원까지 후송 조치하여 신의성실을 다하여야 한다.
2) 수질 이상 유무를 상시 확인하여 매일 양호한 수질유지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담수 또는 혼탁수가 유입되면 파주시장에게 보고 후 바닥 물청소를 실시한다.
4) 수영장 욕조 바닥 및 벽면은 수중청소기를 사용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5) 수영장시설 운영 관련 인력은 수영강습, 수질 및 안전관리, 수영장 청소 등을 실시하며 이용객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시설들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한다.
6) 현장 관리 인력은 통일된 복장을 착용 고정 배치하여 매일 수영장 및 수영장 시설 주변, 시설

내 모든 시설 등에 대하여 시설관리, 안전관리, 순찰, 청소를 실시한다.

7) 천재지변 및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한다.
8) 기상예보에 집중호우, 태풍 등 특보 발효 시 시설물 및 시설물 주변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하고 기상예보 해제 시 즉시 복구한다. (파손 및 분실 시 수탁자 책임)
9) 수탁자는 야간 근무 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처리하고 파주시장에게 보고한다.
10) 수탁자는 과업대상에 대해 월간보고시 운영일지에 근무상태, 청소상태, 이용인원, 시설점검, 수질관리, 보안점검, 기타 특이사항 등 운영 관련 일체 세부사항을 기재하여 파주시장에게 제출한다.

나. 시설물의 폐기물 처리

1) 모든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재활용품(종이류, 캔류, 병류 등) 및 기타 폐기물로 분리수거하여야 한다.
2) 분리수거 된 폐기물은 지정된 장소에 임시보관 후 조속히 반출할 것이며 임시 보관 장소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단, 재활용품은 일정량을 수거하여 따로 반출가능

3) 정부의 쓰레기 감량화 및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시의 조치)

가. 시설 이상, 화재, 침수, 정전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즉시 긴급조치하고 파주시장 및 관계기관에 알린다.

나. 장애인 등 재난 상황에서 대피 지원이 필요한 이용자를 고려한 비상대피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안내 및 훈련을 실시한다.

제11조(응급처치 및 사고보고)

가. 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처치, 119 신고 및 필요 시 의료기관 이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나. 사고 원인·경과·피해·조치사항을 파악하여 파주시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서면 사고보고서를 제출한다.

제12조(보고사항 등)

가. 수탁자는 시설 파손·망실, 안전사고, 감염병·재난, 중대한 민원, 운영 중단 및 대외적으로 파급 우려가 있는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한다.

나. 처리계획과 조치결과는 파주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13조(제출서류)

가. 수탁자는 다음 서류를 파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 호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에도 같다.

1) 운영계획서 및 연간·월간 사업계획서
2) 내부 운영지침

3) 비상시의 역할분담 및 연락체계
4) 조직도, 업무분장표, 인력배치 및 자격증명 자료
5) 비상대응계획, 안전·위생관리계획, 점검표
6)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장애인체육회 협력 관련 협의·이행자료
7) 기타 파주시장이 요구하는 운영 관련 서류

※ 제출주기와 서식은 계약서 및 파주시장과의 협의에 따른다.

제14조(일보 및 업무예정표)

수탁자는 연간·월간 업무예정표, 운영일보, 시설물 점검일지, 수질관리 기록, 교육일지, 근무편성표, 회원·민원 관리기록 등 관련 장부를 작성·보관하고 파주시장의 요구 시 제출한다.

제15조(보안의무)

가. 수탁자는 파주시장의 승인 없이 당해 위탁업무 수행을 통하여 얻은 정보 및 기밀사항을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나. 위탁업무 수행을 통하여 얻은 정보 및 기밀사항을 외부에 누설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다. 인계·인수는 파주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 또는 해제 시에 시설, 기구, 기자재 및 물품 등의 원상복구와 반환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인계·인수서상의 재산은 물론 시설물의 배경을 촬영한 기록사진을 상호 보관한다.

제16조(준수의무)

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관리에 관한 전문지식 및 기능의 충분한 습득
2) 시설설비 및 시설물의 최적의 유지관리와 안정성 확보
3)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최선의 서비스 자세와 품위유지
4) 일체의 자료, 도면 및 설비시설에 대한 보안유지

나. 수탁자는 계약상의 지위 또는 업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다. 수탁자 및 수탁자의 근로자는 업무집행에 대하여 파주시장의 지시 감독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용자에 대한 차별·비하·모욕 및 부당한 이용제한
2) 업무집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3) 사전허가 없이 출입제한 지역을 출입하는 행위
4) 근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5) 소란한 행동 및 각종 언행이 타인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6) 시설 내에서의 음주, 도박행위

7) 업무상 습득한 정보 및 기밀사항을 누설하는 행위
8) 시설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는 행위
9) 대외적으로 파주 반다비 체육센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10) 기타 파주시장이 금지하는 행위

라. 수탁자의 근로자는 일정한 복장을 하고 피복은 항상 깨끗이 하여야 한다.

마. 수탁자는 시설이 파손했을 때 또는 시설 등이 파손된 것을 발견했을 때는 반드시 파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바. 수탁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에 따른 처벌 및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무실 등의 사용)

가. 시설 운영을 위해 인계받은 사무실·기구·장비 등은 승인받은 용도로만 사용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한다.

나. 파손·망실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책임 범위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 조치한다.

다. 장애인체육회 등의 별도 공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사용 근거 및 범위는 파주시장이 관계 법령 및 계약에 따라 별도로 결정한다.

제18조(시설점검 및 수리·개선)

가. 수탁자는 설비별 일상·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한다.

나. 경미한 유지보수는 위탁업무 범위 및 계약에 따라 처리하고, 주요 수리·교체 및 시설 개선은 사전에 파주시장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시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하고 즉시 보고한다.

다. 장애인 편의시설과 접근 동선의 정상 작동 및 통행 안전을 우선적으로 점검한다.

제19조(경비 및 도난)

수탁자는 시설 및 물품의 도난·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순찰·보안 조치를 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파주시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20조(기타사항)

가. 수탁자는 시설물 이용객을 상시 관리·조망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항상 의료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나. 본 과업의 운영관리 용역을 위해 사전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는 등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다. 수탁자는 과업수행 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파주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파주시장의 요구가 있을 시 수탁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파주시장의 의견에 따른다.

제2장 특기사항

제21조(인력채용 및 관리)

가. 수탁자는 용역인력의 신규채용 또는 교체 시에는 사전에 파주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파주시장은 수탁자의 용역인력 중 부적당한 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다. 수탁자는 전문자격 및 직무능력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및 시설별 법정 선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수탁자는 수영지도 및 수상안전 인력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배치기준을 준수하고, 결원 등으로 인한 운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수탁자는 장애인 이용자를 응대하는 직원에 대해 장애인 인식개선, 의사소통 및 안전·편의 지원 교육을 실시한다.

바. 수탁자는 정상적인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적정 운영인력을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결원 발생 시에는 파주시장과 협의하여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수탁자는 종사자 채용 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법령에 따른 자격 및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파주시장이 요구하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수탁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여 저임금으로 인한 이직을 방지하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당한 해고 또는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수탁자는 근로자의 신규채용 및 해직 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한다.

차. 수탁자는 근로자의 임용 및 업무 재조정 등이 발생할 경우 업무분장표를 파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카.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파주시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타. 수탁자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근로조건 보호 : 계약서 명시사항)

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하여야 한다.

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근로계약기간 약정하여야 한다.

다. 임금·근로시간·사회보험·휴게 및 안전보건 등 법정 의무를 준수한다.

라. 수탁자와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근로자가 30인 이상의 수탁기관의 경우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마. 수탁자는 노무비 지급내역 등 파주시장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출하고, 파주시장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바. 파주시장이 요구할 경우 수탁자는 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수탁자는 노동자 근로조건과 관련한 파주시장의 지도·점검에 적극 임하여야 한다.

아. 중대한 근로조건 보호의무 위반 시 계약에서 정한 제재 또는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제23조(근로자의 고용책임과 교육)

가. 수탁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에 의거 고용하는 근로자에 관련된 일체의 문제에 대하여 단독 책임을 지며 파주시장에 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전 항의 단독 책임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국가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
2)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3)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4)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책임
5) 복리후생에 대한 책임
6) 파주시장과의 업무에서 취득한 비밀유지 보전에 대한 책임
7) 근로자에 대한 점검 등 관련된 업무책임

다. 근로자의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유지 등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작업 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도 같다.

라. 수탁자는 근로자의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련 규정이 정한 각종 보험 가입을 하여야 하며, 파주시장이 요구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탁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관련 교육 및 일반 소양교육을 통해 파주시장과 이용 고객에게 피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근무내용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제24조(관리책임자의 의무)

가. 수탁자는 현장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직원관리, 업무수행 지휘·감독, 시설점검 및 파주시와의 협의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나. 관리책임자는 운영실적·안전관리·민원·시설점검 및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협력사항을 포함한 월간보고서를 제출한다.

제25조(운영비 지원 및 정산)

가. 수탁자는 최초의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계약금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파주시"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를 파주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보증금액을 "파주시"에 귀속하게 조치하여야 할 특약조항이 있을 것

나. 수탁자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내 운영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산자료를 제출하여 정산 후 손실액 또는 이익금을 협상비율에 의거 120일 이내 지급(납부)한다.

1) 연간 수입내역서
2) 정산비의 연간 지출 내역서
3) 지출내역 금액의 항목이 확인될 수 있는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다. 수탁자는 수입·지출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증빙자료를 적정하게 보관한다.

라. 파주시장은 정산 및 지도·점검에 필요한 회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한다.

제26조(용역시행)

가. 본 용역은 제안서, 과업지시서 및 파주시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은 지역주민과 파주시를 찾는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을 제공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
수탁자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용역을 수행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에 준하는 친절함과 예의를 갖추어 민원인과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다. 수탁자는 제안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스포츠센터의 운영 관리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장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수탁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수탁자는 특이사항 발생시 파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된 경우의 용역 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탁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바. 근로자의 초과수당, 특별작업수당 등은 수탁자가 신축적으로 시행한다.

사.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탁자가 파주시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탁자가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파주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할 시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자. 과업내용 중 세부내용은 파주시장의 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차. 장애인체육회와 협의한 프로그램 운영사항은 파주시장의 승인 범위에서 시행하며 시설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수탁자의 책임은 유지된다.

카. 운영상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사전에 파주시장과 협의한다.

제27조(용역관리)

가. 수탁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용역을 착수하고 지체

없이 용역을 추진하여 계약기간 동안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기한의 일시중단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용역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수탁자가 제안서대로 운영하지 않거나 또는 파주시장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용역 종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수탁자의 운영용역 방법 또는 운영이 미숙하여 조잡한 용역이 우려될 때

다. 작업시간

1) 수탁자의 용역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규정 시간 외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파주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수탁자의 용역 시행상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파주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공정관리

1) 수탁자는 관리대상별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파주시장의 승인을 얻는다.

2) 수탁자는 승인받은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별도용역의 공정은 수탁자와 파주시장이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한다.

마. 용역용 재료의 관리

1) 관리에 사용되는 재료는 품질과 규격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관리에 쓰이는 재료의 수량은 파주시장의 확인을 받고 기록해야 한다.

제28조(예비조사 및 시험운영)

가. 수탁자는 개관 전 현장조사 및 인계·인수, 기계·전기·소방설비 시운전, 수질·안전 점검, 직원 교육 및 운영시스템 점검 등을 실시한다.

나. 장애인 이동 동선, 편의시설, 탈의·샤워시설 등 실제 이용환경을 점검하고 미비사항을 파주시장에게 보고한다.

다. "가"항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29조(기록관리)

가. 수탁자는 시설점검·안전교육·운영실적·프로그램·회원·민원·사고·회계 관련 기록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관리한다.

나. 보존기간 및 제출·인계 방법은 관계 법령과 계약서에 따른다.

제30조(계약해지)

가. 수탁자 또는 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주시장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 파주시장은 수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파주시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과업대상의 문서 또는 물품을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때
2)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3)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 계약조건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파주시장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때
4)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 또는 불이행 하였거나 수탁자로서 부적당하다고 파주시장이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나. 계약 종료 시 수탁자는 시설 및 자료를 차질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제31조(계약조건의 변동)

상호간 타당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의 조정, 기타 본 계약내용에 관련된 계약 조건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32조(손해배상책임)

가.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파주시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서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나. 안전사고, 시설훼손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호·보고·피해확산 방지 의무를 이행한다.

제33조(어구의 해석)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구의 해석은 파주시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34조(변동사항 등의 통보)

수탁자는 계약체결일 이후 주소·대표자·투입인력 변경 등 주요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파주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

제35조(기타사항)

가. 수탁자는 비상연락망 및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필요한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나. 시설·물품·운영자료의 인계·인수는 파주시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운영 세부사항은 관계 법령, 계약서 및 파주시장과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